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30
----------	-------

발의연월일 : 2025. 8. 7.

발 의 자 : 황정아 · 박용갑 · 김 현
박해철 · 이병진 · 황명선
오세희 · 문금주 · 김 윤
이재관 · 양부남 · 한민수
손명수 · 이재강 · 박지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임을 고려할 때 현행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감면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일몰기한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

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 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받은 기술육성주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술육성주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 ----- ----- ----- ----- ----- ----- ----- ----- ----- ----- ----- ----- -----.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지정받은 첨단기술기업	1. ----- ----- --- <u>2030년 12월 31일</u> ----- -----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2. ----- -----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등록한 연구소기업 <u><신 설></u> ② ~ ⑩ (생 략)	-----<u>2030년 12월 31일</u>----- ----- 3. 「<u>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u>」 제9조에 따라 <u>2030년 12월 31일까지</u>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u>국가전략기술</u> 해당 여부를 확인받은 기술육성주체 ② ~ ⑩ (현행과 같음)
--	--